

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3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16. 6. 21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1,0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중 특정시설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500세대에서 1,000세대로 수정하고(안 제8조의4제3항),
- 주민공동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·야간보호서비스 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의4제3항 제1호 및 제2호)

#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1,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재가노인복지시설(단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)
2. 장애인복지시설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,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.)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.(단,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.)</u></p>	<p>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1,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재가노인복지시설 (단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)</u></p> <p>2. <u>장애인복지시설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,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.)</u></p>

#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1,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재가노인복지시설(단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)
2. 장애인복지시설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,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.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4 (주민공동시설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8조의4 (주민공동시설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1,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재가노인복지시설(단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)</u></p> <p>2. <u>장애인복지시설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,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.)</u></p>